

Questions Relating to Differences between
Illuminátus and Tauriorum Concern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Guaraníes Mountains, Lake Bradder and South Sea.

RECORD

Thirteenth Annual KSIL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
2021



대한국제법학회

Copyright© 2021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ll Rights Reserved

NOTIFICATION, DATED 6 JUNE 2021, ADDRESSED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ILLUMINÁTUS
AND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KINGDOM OF TAURIORUM

The Hague, 6 June 2021.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Rules of Court,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receipt of the joint notification dated 6 June 2021. I have the further honor to inform you that the case of Questions Relating to Differences between Illuminátus and Tauriorum Concern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Guaraníes Mountains, Lake Bradder and South Sea has been entered as 2021 General List No. 101. The written proceedings shall consist of memorials to be submitted to the Court by 16 August 2021. Oral proceedings are scheduled for 27 August 2021

Registrar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JOINT NOTIFICATION, DATED 6 JUNE 2021, ADDRESSED TO THE REGISTRAR OF THE COURT

The Hague, 6 June 2021.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Illuminátus and the Kingdom of Tauriorum,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1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e have the honor to transmit to you original copies of the Special Agreement (together with Annexes) between the Republic of Illuminátus and the Kingdom of Tauriorum for Submiss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f Questions Relating to Differences between them Concern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Guaraníes Mountains, Lake Bradder and South Sea., signed at Seoul, the Republic of Korea on 25 May 2021.

For the Republic of Illuminátus

the Kingdom of Tauriorum

Reed Richard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ahnos Eternal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pecial Agreement

Between Illuminátus and Tauriorum for Submiss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f Question Relating to Differences Concern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Guaranies Mountains, Lake Bradder and South Sea.

The Republic of Illuminátus and the Kingdom of Tauriorum,

Considering that the differences have arisen between the Republic of Illuminátus and the Kingdom of Tauriorum concern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Guaranies Mountains, Lake Bradder and South Sea;

Recognizing that the Republic of Illuminátus and the Kingdom of Tauriorum have been unable to settle these differences by negotiation;

Desiring further to define the issues to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rt,” for settling this dispute;

In furtherance thereof the Republic of Illuminátus and the Kingdom of Tauriorum have concluded the following Special Agreement:

Article 1

The Republic of Illuminátus and the Kingdom of Taurioru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shall submit the questions contained in Annex I of this Special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40, paragraph 1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Parties agree that the Court has jurisdiction to decide this case and that they will not dispute the Court’s jurisdiction in the written and oral proceedings.

Article 2

1. The Parties shall request the Court to decide this case on the basis of the rules and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any applicable treaties.
2. The Parties also shall request the Court to decide this case based on the Agreed Statement of Facts, attached as Annex I, and an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cluding Annex II(Annex II-1, Annex II-2, Annex II-3) attached, which are integral parts of this Agreement as well.

3. The Parties also shall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legal consequences, includ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from any judgment on the questions presented in this case.

Article 3

1. Procedures shall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 of the Official Rule of the 2021 KSIL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Official Rule of the thirteenth of KSIL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

2. The Parties request the Court to order that the written proceedings should consist of memorials presented by each of the parties not later than the date set forth in the Official Schedule of the 2021 KSIL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

Article 4

1. The Parties shall accept any judgment of the Court as final and binding upon them and shall execute it in its entirety and in good faith.

2. Immediately after the transmission of any judgment,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negotiation on the modalities for its execution.

Article 5

This Special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signature.

Done at Seoul, the Republic of Korea, 25 May 2021, in two copies, in Korean and English language, and each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Illuminátus

he Kingdom of Tauriorum

Reed Richards
Minister of Foreign Affair

Tahnos Eternals
Minister of Foreign Affair

부록 1. 합의된 사실 관계

1. 일루미나투스 공화국(Republic of Illuminátus; 이하 일루미나투스)과 타리오름 왕국(Kingdom of Tauriorum; 이하 타리오름)은 북고·남저 지형의 원반도(Wonnie Peninsula)에 위치하고 있다. 원반도 북쪽 산악 지대에서 발원한 썬니강(Sunny River)은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려와 평야지대에서 1,600km² 면적의 브래더호수(Lake Bradder)를 이루고 있다. 평균 수심 4m의 브래더호수는 썬니강 외에도 주변의 수십여 개 강과 지천으로부터 물이 유입되지만 호수로 들어온 물들은 모두 호수 밑에 인접한 남해 바다를 향해 낮고 완만한 폭포 형태로 흘러 나간다.

2. 썬니강과 브래더호수를 중심으로 일루미나투스는 서쪽에 그리고 타리오름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썬니강과 브래더호수는 가항항로로 남해에 연결되지 않아 항행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나, 일루미나투스, 타리오름 양국(이하 양국)의 자연적 국경선으로 역할하고 있다. 썬니강 발원지인 과라니산(Guaraníes Mountains) 일대 산악 지대는 양국 간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아 지난 수십 년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있어왔다. 가장 큰 무력충돌이 있었던 1993년, 양국은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과라니산 정상을 중심으로 썬니강과 일직선이 되는 남북 방향으로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3. 과라니산 일대에는 양국 민족과 상이한 과라니 부족(이하 과라니족)이 오랜 기간 살아왔다. 연어를 부족 상징 동물로 하는 과라니족은 전통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LC)에 해당한다. 과라니족은 국제정치에 무관심하여, 산악지대에서의 양국 무력 충돌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단지, 본인들 거주지에서의 무력 충돌 시 일부 부족민들이 길잡이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용병과 같이 활동하였을 뿐이다. 과라니족은 1993년 평화조약에 의해 본인들 거주지 위로 국경선이 정하여졌음을 통지 받고도, 과라니산은 수천 년 전부터 본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양국이 임의로 국경선을 정하더라도 본인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개의치 않고 있다. 실제 이들은 국경선과 무관하게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하나의 부족으로 양국 관할권 하에 거주하며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생활하고 있다.

4. 양국은 지정학적 이유로 과라니족이 양국 중 특정 국가에 의존하게 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게 되는 것은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양국은 과라니족이 성지로 여기는 과라니산 고산 지대에 군사기지 설치를 시도 하였으나 과라니족의 극렬한 무력 저항을 받은 바도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과라니족 인권을 탄압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이후 양국은 과라니족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고산지대 등 과라니족 거주지 부근에 군부대를 배치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과라니산을 중심으로 형식적 국경선을 획정하고 과라니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사실상 전략적 중립지대로 활용함으로써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5. 브래더호수 서편에는 일루미나투스 외에도 이루미나투스, 삼루미나투스, 사루미나투스, 오루미나투스, 육루미나투스, 칠루미나투스까지 6개국이 존재한다. 영토 및 인구 규모가 작은 소국들이 해당 6개 국가들은 가장 큰 일루미나투스를 중심으로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루미나투스를 포함한 이들 7개국은 최북단의 일루미나투스부터 순차적으로 브래더호수에 접해있고 칠루미나투스 다음으로는 다시 일루미나투스가 호수 최남단에 접해 있다. 7개국들의 국내 강들은 모두 브래더호수로 연결되어 있으나, 남해 연안국인 일루미나투스와 달리 브래더호수 서편 6개국은 모두 내륙국이다.

6. 과라니산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원시림 지역으로 미개발 상태로 보존되어왔다. 특히 과라니산에서 발원하여 브래더호수로 연결되는 씨니강은 연어 (*Guaranies Keta Salmon*)들의 산란지로 여기서 태어난 연어 치어는 브래더호수와 남해를 거쳐 멀리 북쪽 바다 끝까지 나아가 다시 산란을 위해 씨니강으로 회귀한다. 이런 연어의 생태적 가치는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양국은 과라니산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 관할권 내 과라니산 일부 지역을 국내법의 자연유보지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양국 생태학자 및 환경단체들은 과라니산을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의 인간과 생물권(Man and the Biosphere: MAB) 프로그램에 따라 접경생물권보전지구(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s: TBR)로 지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7. 양국은 국내 여론과 동시에 UNESCO TBR이 군사적 완충지로 활용되어 온 국제 사례를 참고하여 2020년 과라니산 공동관리협약(이하 과라니산 협약, 부록 2-1)을 체결하고 서명·비준하였다. 양국은 과라니산 협약에 따라 과라니산 정상권을 중심으로 양국이 합의한 특정 지역을 UNESCO TBR로 지정할 것에 합의하고 UNESCO에 TBR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과라니산 생태적 가치에 관심

을 유지하여 온 UNESCO는 과라니산 지역의 TBR 지정은 국제평화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것임을 선언하고 과라니산 협약 발효 일에 맞춰 양국이 합의한 지역(과라니산 협약, 지도 2 참조)을 TBR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8. 타리오룸은 1992년 체결된 생물다양성협약은 비준하였으나 일루미나투스와 달리 그 후속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았었다. 과라니산 협약 체결과 함께 과라니산의 생물유전자원에 주목한 타리오룸은 나고야의정서를 2021년 1월 1일 비준하고 해당 사실을 일루미나투스에 통지하였다. 타리오룸은 나고야의정서 국내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의정서 국내 발효일인 2021년 9월 1일 전에 국내법에 따라 국내외의 바이오기업에게 자국 내 과라니산 일대에서의 연구조사를 위한 접근 허가를 발급하였다.

9. 과라니산에는 고유 식물군인 과라니꽃이 군락을 이루고 서식하고 있다. 과라니족은 과라니꽃을 전통방식에 따라 치료제로 사용하여 왔다. 최근 과라니꽃에서 인간 면역력을 강화하는 특수 유전자가 연구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이에 타리오룸은 과라니꽃에 대한 추가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과라니꽃 유전자를 활용한 면역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는 자국 기업에게 자국 내 생물유전자원 접근을 허용하며, 공동관리지구 밖 완충지역에 연구실험소 건축을 허가하였다. 특히 해당 접근 허가 지역은 국내법상 전이지역 및 완충지역 뿐 아니라 핵심지역 중 일부 과라니산 협약 공동관리지구도 포함되었다. 나아가, 타리오룸은 해당 과라니꽃이 과라니족의 거주 지역에 서식한다는 사실과 과라니꽃을 이용한 치료법이 과라니족의 전통지식에 기반을 두었음을 이유로 과라니꽃의 유전자를 이용한 면역치료제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과라니족에게 지급하도록 2021년 6월 기존 자국 유전자원법을 개정하였다.

10. 일루미나투스는 타리오룸이 과라니산 협약에 서명, 비준한 후 과라니산 지역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및 연구실험소 건축 허가 행위 과정에서 자국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위반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과라니족에게 과라니꽃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과라니족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과라니산 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타리오룸은 일루미나투스가 협약위반으로 제기하는 모든 사항은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과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른 것으로 사전협의를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브래더호수는 일루미나투스 및 타리오름 등 총 8개국의 수자원으로 역 할을 하고 있다. 1972년 이들 8개국은 브래더호수 공동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브래더 협약, 부록 2-2)을 체결하고 브래더호수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실무적 협력을 진행하여 왔다.

12. 공동운영위원회는 1990년대 이후 수질이 악화된 브래더호수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국에서 브래더호수에 배출하는 오염물질 할당량을 정하고 할당량 이상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모든 당사국들에게 제안하였다. 동 제안에 따라 진행된 당사국들의 회의에서 일루미나투스를 포함한 써니강 서편의 국가들은 모두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동의하였지만 타리오름 대표는 자국의 경제, 사회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할당 의무를 정하는 것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수질오염총량제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반대하였다.

13. 이후 타리오름을 제외한 7개국은 1997년 브래더호수 공동관리를 위한 의 정서(이하 브래더 의정서)를 체결하여 수질오염총량제 및 배출권거래제를 시 행하였다. 타리오름은 해당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14. 2000년 대 이후 브래더호수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자 브래더 의정서 당사 국들은 타리오름에게 브래더 의정서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타리오름은 동일한 수질오염총량설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브래더 의정서 참여를 거 부하였다. 많은 논의 끝에 브래더 협약 당사국들은 타당한 방식으로 각국의 의무할당량을 정하는 브래더 의정서 방식 대신 각국이 자국 상황에 따라 자 발적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정하여 통보하 는 방식을 도입한 브래더호수 공동관리를 위한 협정(이하 브래더 협정, 부록 2-3)을 2015년 체결하였다. 브래더 협약과 브래더 협정의 당사국은 동일하고, 동일주제를 다루는 계승적 조약 관계이며, 브래더 협약은 종료되지 않고, 브 래더 부록에 발췌된 브래더 협약 내용은 브래더 협정과 양립, 유효하여 양국 에 적용된다.

15. 브래더 협정 제1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1)에 대표 자 격으로 참여한 타리오름 환경부장관은 자국이 브래더호수의 환경에 무관심

하다는 주변국에 비난을 의식하여 공식 연설을 통해 “타리오름은 어느 국가보다도 브래더호수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단지 모든 국가가 동일한 경제 사회적 발전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이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주장한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설 말미에 “타리오름은 우리 사정에 맞는 NDCs를 준비하여 제출할 것이며, 제출된 NDCs는 반드시 준수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 이라고 천명하였다.

16. 브래더 협정 COP1에서는 타리오름 환경부장관의 공식 연설에 고무되어 COP결정(decision)을 통해 일련의 NDCs 작성, 제출 및 준수 방식에 대한 결정문(COP Decision1/CP1, 부록 3)을 총의(consensus)에 의해 채택하였다.

17. 브래더 의정서의 당사국인 7개 국가들은 2020년까지 브래더 의정서에 따른 할당량의 10%를 추가 감축하는 것에 해당하는 각각의 NDCs(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5) 2.5~3.5mg/L)를 제출하였고, 타리오름의 경우 2020년까지 현재 자국 내 하천을 통해 브래더호수에 배출하는 오염총량의 5%를 감축하는 것에 해당하는 NDCs(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5) 5.5mg/L)를 제출하였다.

18. 브래더 협정 이행 후 5년이 지난 2021년 첫 이행점검 실시 결과 타 국가들과 달리 타리오름의 경우 자국이 제출한 NDCs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협정 체결 당시 배출한 오염총량보다 오히려 5%를 초과하여 배출한 것으로 이행준수메커니즘을 통해 확인되었고, 타리오름 역시 이를 인정하였다.

19. COP에서 타리오름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루미나투스는 타리오름이 자국이 제출한 NDCs의 미달성은 브래더 협정 위반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타리오름은 브래더 협정에 따르면 협정 당사국들은 NDCs를 준비하여 통보하고 최선을 다해 NDCs 이행에 노력할 의무만 있을 뿐 NDCs를 반드시 달성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브래더협정의 체결과정 및 브래더 협정 제3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0. 일루미나투스는 NDCs는 브래더 협정 COP Decision1/CP1(부록 3)에 따라 조약상의 의무로서 전환되어 모든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나아가 COP1에서 타리오름 환경부장관이 제출할 NDCs를 준수할 것이라는 공식 연설은 타리오름의 일방적 선언으로서 타리오름을 구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 타리오룸의 수도 타이탄시(City of Titan)에는 브래더호수로 연결되는 작은 시내, 송천(Song Creek, 길이 10.84km, 유역면적 59.83km²)이 있다. 도시화에 따라 송천의 위생문제 및 범람 등 시민 안전 문제가 야기되자 타이탄시는 송천 위를 콘크리트 등으로 복개(覆蓋)하여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 최근 환경적 이슈가 대두됨으로서 타이탄시는 송천 위의 콘크리트를 포함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송천을 복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타리오룸 국내법에 따르면 소하천에 해당하는 송천의 복원사업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공사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타이탄시는 소하천정비사업 허가기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등 유관 중앙행정기관과 검토·논의를 통해 복원하려는 송천의 복개 구간이 5.8km에 불과하고 복개 구간 외에 준설작업 등 수로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합하더라도 하천정비구간이 10km 이하라는 점에서 해당 송천복원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절차 없이 송천복원사업을 허가 받은 타이탄시는 송천복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23. 일루미나투스는 송천복원사업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지하화 되었던 도시 하천 송천에 쌓인 오염된 토양을 준설하는 작업은 브래더호수 수질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일루미나투스는 타리오룸이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송천복원사업을 허가한 것은 브래더 협약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였다. 타리오룸은 일루미나투스의 협의 요청을 수락하고 협의과정에서 송천복원사업 허가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양국의 국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24. 일루미나투스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정부 활동 중 환경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screening)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5. 타리오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의무와 환경영향평가사업 대상이 되는 18개 상위 사업군을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87개 단위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하천정비사업의 경우 하천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10km 이상인

사업만이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규정되어있다.

26. 양국은 양국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상이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이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저감대책 등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임에도 동의하였다. 그러나 타리오룸의 환경영향평가 미실시가 브래더 협약 제4조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간극을 줄이지 못하였다.

27. 타리오룸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예방조치는 국내법제도에 따라 시행되며, 국내법에 따라 브래더호수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브래더 협약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일루미나투스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브래더호수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나아가 일루미나투스는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뿐 아니라 관련 통보 및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역시 브래더 협약 제4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8. 일루미나투스는 브래더 협약 당사국 중 타리오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의 관행은 국제사회 또는 최소한 브래더호수를 이용하는 지역 사회에서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소위 최적환경관행 또는 관리방안(Best Environmental Practice) 내지는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이므로 타리오룸이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다.

29. 이에 대해 타리오룸은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여부 자체가 상당한 주의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은 결국 과실(negligence)로 포섭되고, 국가책임법상 과실 여부는 국가책임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따라 검토한 이상 위법의 소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30. 일루미나투스는 송천복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브래더호수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을 타리오룸에 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도 발표하였다.

31. 일루미나투스 내 브래더호수와 남해 인근에는 일루미나투스를 대표하는 기업인 제일화학의 제1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다. 제1사업장에서는 제일화학이 3년 전 개발한 플라센을 생산하고 있다. 플라센은 강도(剛度), 방냉(防冷), 방열(防熱) 성능이 뛰어나고 전기충격으로 투명도 조절이 가능하여 기존 유리 제품을 대체할 수 있어 그 개발 당시 인류가 만들어 낸 최고의 꿈의 물질이라는 찬사를 들었던 물질이다. 그런데 최근 플라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액의 유해성이 확인되어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플라스액은 점도가 낮은 무색무취의 액체이지만 플라스액이 함유하고 있는 무기성 용해물질인 플라스는 그 유독성이 극도로 높아 202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플라스 및 플라스가 포함된 플라스액 등을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규정하였다.

32. WHO에 따르면 수용성 무기물질인 플라스는 급성 독성을 가지고 있다. 유기 플라스 화합물은 건강에는 크게 해롭지 않으며 체내에 들어와도 신속하게 배출된다. 그러나 무기 플라스 화합물은 그 농도가 높은 물을 마시거나 그러한 물로 조리된 음식을 먹거나 플라스 함유가 높은 물에서 자란 해산물을 섭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내에 흡수되는 경우 배출되지 않고 뼈에 축적되어 골수암 및 백혈병을 유발하며, 뇌, 신장 등 장기에 축적되어 각종 암들을 유발한다. WHO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플라스에 대한 보건 기준을 10 μ g/L로 제시하였으나 장기적인 추가 연구 조사가 필요하며 그 보건 기준이 상향 조정 될 수 있음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33. 브래더 협정 당사국들도 플라스의 유해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당사국 총회에서 브래더 협정 체제 내 과학 관련 보조기관을 설립하여 플라스 유해성 및 그 처리 방식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해당 보조기관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로서는 플라스의 유독성을 완벽히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루미나투스의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이 현 과학기술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보건기준인지도 미지수임을 토로하고 있다.

34. 플라스 유독성 확인 이전 제일화학은 사업장 내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플라스액을 처리하여 브래더호수에 배출하여 왔다. 그러나 WHO가 플라스 및 플라스액을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현 폐수처리시설로는 플라스액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

다. 브래더 협정 당사국총회는 일루미나투스에게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나온 플라스틱 폐수의 브래더호수로의 배출을 금지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일루미나투스는 플라센의 생산은 유지하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을 배출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사업장 내 저류소에 저장하여 왔다.

35. 일루미나투스는 플라스틱을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는 대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제거시설을 통해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여 하천, 호소, 연안 해역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36. 일루미나투스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선진폐수처리시스템(Advanced Liquid Waste Processing System: ALWPS)을 활용함으로써 인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유독성을 충분히 제거한다고 주장한다. ALWPS은 폐수를 증발·농축·건조·탈수 및 소각시설을 통해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소각하고,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방지시설에 재유입한다. 특히, 일루미나투스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관련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장 운영에 최고의 선진과학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는 폐수는 배출되지 않고 단지 과학적으로 완벽히 처리된 처리수만이 배출된다고 주장한다.

37. 일루미나투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브래더호수 주변국들은 ALWPS 처리수를 브래더호수에 배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 우려하며 브래더 협약 제5조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일루미나투스는 ALWPS 처리수를 수백 배로 희석하여 일루미나투스 연안에서 1km 이상의 배관을 설치해 해당 배관을 통해 브래더호수가 아닌 남해로 방류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일루미나투스는 ALWPS 실행가능성 및 ALWPS 처리수의 유해성에 대해 WHO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WHO 역시 ALWPS가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ALWPS 처리수 또는 플라스틱 오염수의 유해성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38. 이에 대해 내륙국인 일루미나투스부터 칠루미나투스까지 브래더 의정서 6개국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남해 연안국이자 수산업에 종사하는 타리오룸은 일루미나투스가 플라스틱 오염수를 남해로 투기하는 행위는 양국

이 당사국인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유엔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루미나투스는 ALWPS 처리수는 그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타리옴은 처음 개발할 당시 플라센은 인류 최고의 발견이자 미래 문명의 마중물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불과 30년 만에 플라센은 플라스틱이라는 인류 최고의 유독 물질이자 미래 세대에 가장 치명적인 부담을 과생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현재 과학으로 마치 ALWPS가 플라스틱의 유독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 과학의 한계로 또 다시 수년 후에 ALWPS가 처리하지 못한 유독성이 확인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39. 타리옴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일루미나투스가 남해에 플라스틱 오염수를 투기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및 일반 국제법의 사전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이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일루미나투스는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거부하였다.

40. 양국의 분쟁이 장기화되자 양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대한민국이 해당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현재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모든 사안을 포함한 다음 4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루미나투스와 타리옴은 이를 수용하여 2021년 5월 2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본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을 체결하여 ICJ에 다음 사항들에 대해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 타리옴이 일루미나투스와 협의 없이 과라니산 지역에 PIC을 발급하고 MAT을 설정한 것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타리옴이 2015년 제출한 NDCs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이 브래더 협정 및 일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3) 타리옴이 송천복원공사사업 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브래더 협약 제4조 사전예방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4) 일루미나투스가 남해로 ALWPS 처리수를 방류 또는 플라스틱 오염수를 투기하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 및 일반 국제법의 사전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

40.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이하 유엔공해어업협정), 1972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뎀핑협약)과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1996년 런던의정서)의 당사국이다. 그러나 양국은 이외에 유엔공해어업협정 제1조 1(d)에서 규정한 어떠한 지역 약정 등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41. 양국은 1982년부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며,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및 그 추가의정서인 나고야 의정서의 당사국이다. 또한 양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 for Wrongful Acts: 2001년 국가책임규정초안), 2001년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초국경 피해예방에 대한 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2001년 초국경피해예방규정초안) 그리고 2006년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초국경 피해의 손실분배에 관한 원칙초안 (Draft principles on the Allocation of Loss from Transboundary Harm arising out of Hazardous Activities: 2006년 초국경손실분배원칙초안) 등 3가지 문서의 모든 내용을 관습국제법으로 인정한다는 국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42. 특별협정 부록 1. 합의된 사실관계 수정에 대한 추가 공표

양국은 특별협정 부록 1. 합의된 사실관계 내 오류 및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추후 오류 및 불분명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재판기일 일주일 전에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사무국을 통해 대리인들에게 공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상기 합의에 따라

(1) 사실관계 14 ‘동일한 수질오염총량’ 을 ‘모든 당사국에 동일한 수질오염총량’ 으로 수정하고

(2) 사실관계 38, 39, 40 (4)의 ‘투기’ 는 ‘배출’ 이라 수정한다.

(3) 사실관계 8의 2021년 ‘9월 1일’ 을 ‘7월 1일’ 로 수정한다.

- (4) 사실관계 10의 2021년 7월의 일자는 삭제한다.
- (5) 사실관계 40이 중복되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오는 사실관계 40을 41로 수정하고 이후 41, 42를 각각 43, 44으로 변경한다.
- (6) 사실관계 3의 토착지역공동체의 영어 약자를 추후 등장하는 국제법위원회와 구분하기 위하여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로 수정한다.
- (7) 사실관계 38의 30년은 3년으로 수정한다.
- (8) 사실관계 9의 2021년 6월은 2021년 3월로 수정한다.

부록 2-1. 과라니산 공동관리협약

Agreement for Joint Management of the Guaraníes Mountains

전문

일루미나투스 공화국과 타리오룸 입헌군주국, 양국은

과라니산은 양국 국경을 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하며,

과라니산이 양국의 밀접한 이해관계가 유지된 역사적 지역이자 미래에서도 양국이 함께 공존하여야 할 지역임을 상기하며,

과라니산은 지정학적 특성 상 안보적 중요성 그리고 생태적 특성 상 환경적 중요성이 동시에 있음을 인정하고,

과라니산 지역의 평화와 안전 및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의 가치는 양국 뿐 아니라 전 인류의 공동 관심(common concerns of humankind)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과라니산 일대에서 50여 년간 반목과 무력적 위협 및 사용이 있어 왔으나, 1993년 평화조약 등 우호관계협약을 통해 평화 관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과라니산이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의 교육 장소로 활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과라니산의 생물자원은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의 대상이자 지속가능한 이용의 대상임을 확인하며,

과라니산은 UNESCO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으로 평화 및 생태공원으로서 과거 전쟁과 반목의 지역에서 평화와 협력을 위한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 이해를 같이하며,

과라니산의 자연생태계는 UNESCO의 MAB과 TBR을 통한 양국의 공동관리로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 보전, 관리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과라니산의 공동관리에 있어 상호간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인해 양국의 우호관

계가 증진될 수 있음을 공감하며,

과라니산의 공동관리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규범, 특히 양국이 체결한 우호 및 통상 조약을 포함한 양자 간 조약 및 양국이 당사자인 다자조약 그리고 관습국제법을 존중하며,

과라니산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과라니족의 생활양식 등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며 그 정치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훼손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과라니산 고산 지대를 중심으로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공동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양국이 공동관리에 협력함으로써 양국의 우호와 평화를 증진하고, 과라니산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1. 과라니산의 지역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관리지구를 비무장화하고 공동관리 구역에서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을 금지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준수한다.
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입각하여 국제사회에 과라니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데 협력한다.
3. 양국은 UN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의거하여 개발 할 주권을 갖는다. 각국은 또한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 할 책임이 있다
4. 과라니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의 능력에 따라 사전주의적 접근이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대비 효과적 조치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5. 자국 관할권 하의 특히 공동관리 구역 내의 과라니족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또한 무조건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지역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다.

6. 과라니산 공동관리 대상이 되는 지역의 관리 운영에 관한 협력은 UNESCO의 지원 하에 제6조의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3조 적용 대상

공동관리 대상이 되는 지역(이하 공동관리지구)은 양국이 과라니산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확인한 지역으로서 첨부되는 지도 1 및 지도 2에 표시된 부분으로 한다.

제4조 조약 발효 전 당사국의 의무

1. 당사국은 협약 발효일 전에 자국의 관할권 하의 과라니산의 생태지도를 작성하여 공동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생태가치 및 보호 필요성에 따라 자국의 관할권 하의 과라니산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법에 따라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공동관리지구 내의 안보 및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제5조 국제기구와의 협력

양국은 제3조의 공동관리지구를 UNESCO 관련 규정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

인간과 생물권프로그램(Man and the Biosphere: MAB)의 접경생물권보전지구(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로 지정하고 국제기구와의 지원 속에 양국은 국제기구와 공동관리지구 내의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협력한다.

제6조 당사국 간 협력

1. 양국은 공동관리지구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금지한다.

(1) 1953년 평화조약에서 허용하지 않은 군부대 배치 등 일체의 군사적 활동

(2) 공동관리기구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발행위, 단, 개발행위가 양국이 합의한 타 국제협약 및 관습국제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과라니족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2. 양국은 공동관리지구 내의 평화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안보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공동관리위원회에 해당 활동 계획에 대해 통지하며,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관리지구 내의 평화와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신의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 양국의 완충지역 및 전이지역 내에서의 활동 그리고 핵심지역 중 공동관리지구 외에서의 활동으로 공동관리지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은 공동관리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공동관리지구 내에서의 활동으로 공동관리지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은 공동관리위원회에 활동 전 그 계획이 보고되어야 하며,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제7조 협력기구

1. 공동관리지구를 공동관리하기 위하여 양국은 자국 관할권하의 국가MAB위원회(MAB National Committees)를 구성하고 양국의 국가MAB위원회와 UNESCO에서 파견하는 대표로 구성된 공동관리위원회를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관리지구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양국의 정책 심의 및 자문
- (2) 공동관리지구 내의 평화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심의
- (3) 공동관리지구 관련 UNESCO와의 교류 및 협력 업무

제8조 분쟁해결절차

1. 이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당사국이 선택하는 협상·중개·조정이나 그 밖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2. 일방 당사국이 타 당사국에게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음을 통지한 후 12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분쟁 당사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의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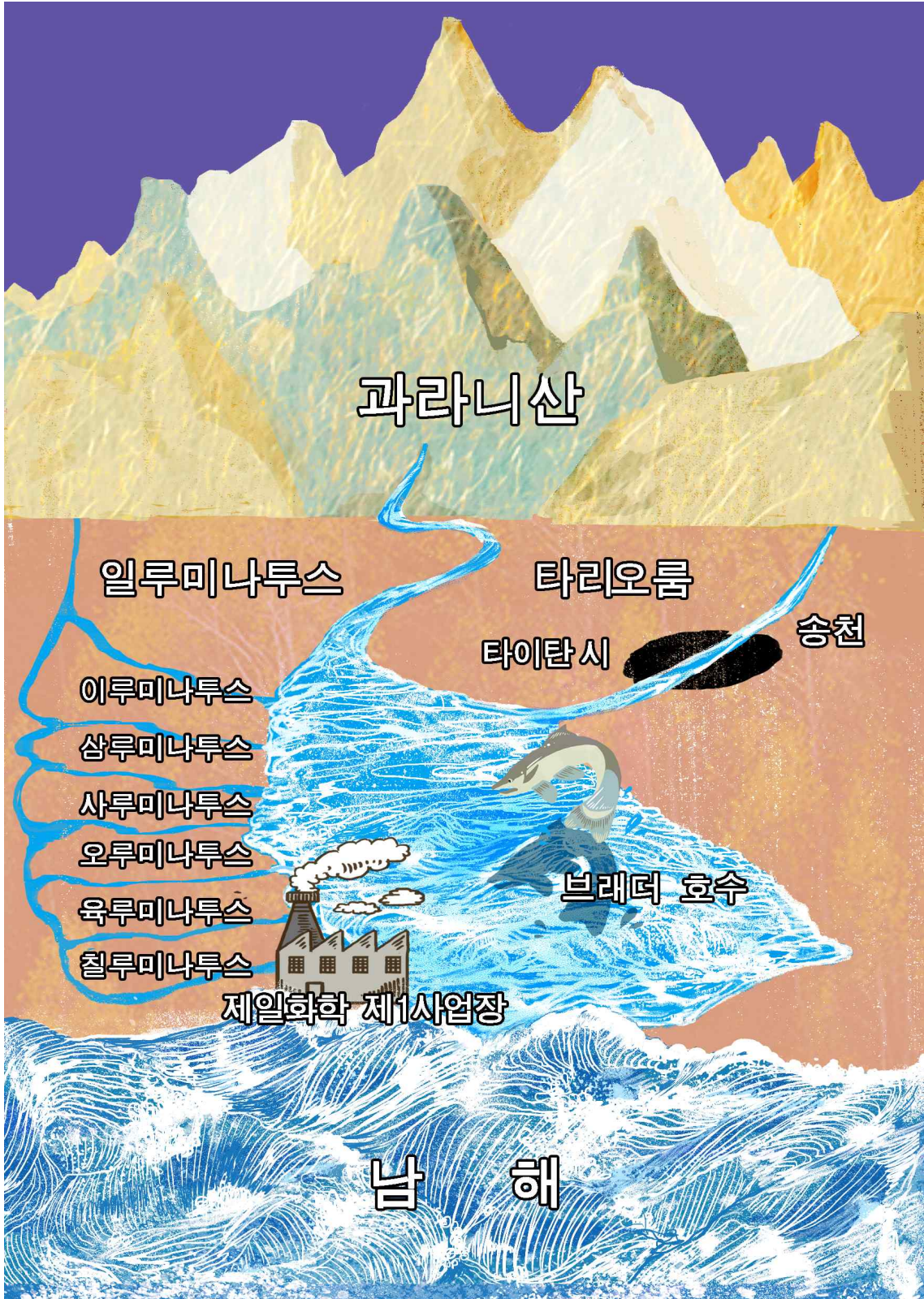
제9조 발효

이 협약은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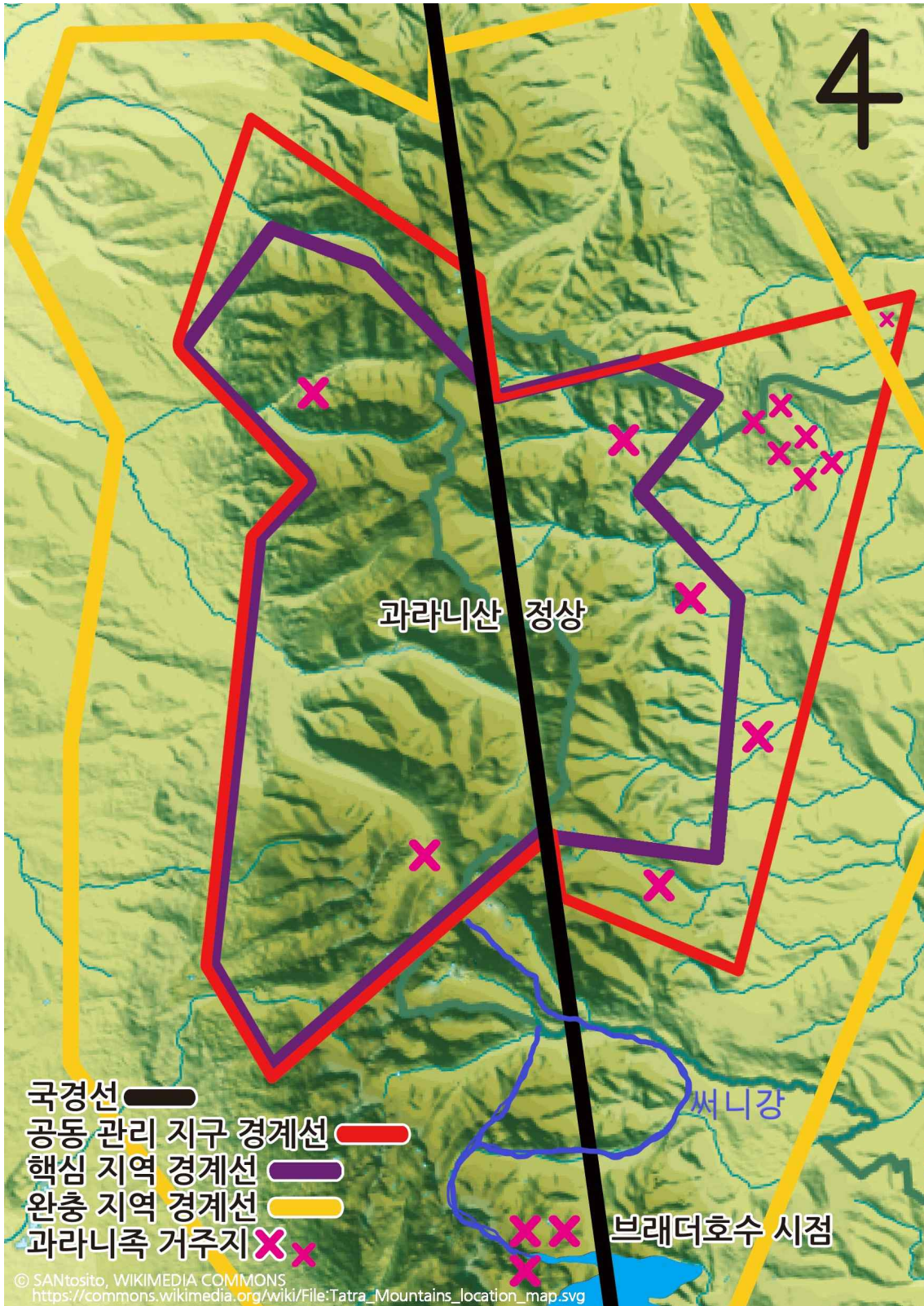
제10조 정본

이 협약은 단일한 원본으로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작성되고, 각 원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지도 1: 과라니산 등



지도 2: 과라니산 인근 국경선, 공동관리지구, 핵심지역 및 완충지역



부록 2-2. 브래더호수 공동관리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Joint Management of the Bradder Lake

제1조 목적

동 협약은 브래더호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브래더호수의 합리적이고 형평한 이용과 그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제2조 적용대상

1. 동 협약은 브래더호수의 비항행적 이용에 적용되며 씨니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씨니강이 브래더호수와 연계되는 수계에는 적용된다.
2. 동 협약은 브래더호수 관할수역을 정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이 체결한 브래더 조약의 등거리선 원칙과 호수 저조선으로부터 2km² 내의 관할수역 · 2km² 외의 공유수역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3조 형평하고 합리적 이용과 참여

1. 당사국들은 브래더호수를 형평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브래더호수로 연계되는 자국 관할권 하의 하천 등은 브래더호수의 적절한 보호에의 부합성 및 동 협약 당사국들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하천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하천 및 브래더호수에서 발생하는 최적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용, 개발되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형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브래더호수의 사용, 개발 및 보호에 참여하여야 한다.
3. 형평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1) 브래더호수의 지리, 수문, 수로, 기후, 생태 등 모든 자연적인 요소
 - (2) 당사국들의 인구 및 호수에 의존하는 인구

- (3) 당사국들의 브래더호수에 대한 기존 및 잠재적 이용
- (4) 당사국들의 브래더호수의 이용 활동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 및 보호 조치
- (5) 당사국들이 브래더호수의 이용 활동 및 보호 조치의 일반 관행

제4조 사전예방의무

1.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브래더호수로 연결되는 하천 및 브래더호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타 당사국에게 중대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¹⁾

2.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는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되며, 환경영향평가는 당사국의 국내법을 통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²⁾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제9조의 공동운영위원회에 송부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특정 당사국의 관할 브래더호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국가는 해당 평가 결과를 해당 특정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어떤 당사국도 타 당사국의 활동으로 자국 관할의 브래더호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활동 국가에게 자국이 판단한 근거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계획된 조치의 환경적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문제의 조치를 계획 중에 있는 국가가 제3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국가에 대해 그러한 판단결과에 대하여 서면상의 설명과 함께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정보 요청국이 이러한 판단결과에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양 당사국들은, 어느 일방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의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하며 협의

1)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Parties shall take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in use the Bradder lake and watercourses connected to it to prevent causing of significant harm to Parties. 당사국 편집.

2)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cluded in all necessary measures shall be implemented in due diligence through rules and regulations of Parties. 당사국 편집.

의 과정 동안, 문제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6 개월의 기간 동안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7. 당사국은 상기 협의 과정에서 당사국의 형평한 이익형량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련 사항 및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환경 피해의 중대성 및 위협성의 정도
- (2)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활동의 중요성 및 필요성
- (3) 피해를 예방하거나 그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수단의 이용가능성
- (4) 대체 수단의 경제적 비용 및 실행 가능성
- (5)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대체 수단 등 예방 조치에 기여할 의사
- (6)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적용하는 예방의 기준, 그리고 유사한 지역 혹은 국제적 관행에서 적용되는 예방의 기준

제5조 사전주의의무

당사국은 브래더호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의 능력에 따라 사전주의적 접근을 널리 실시하여야 한다.³⁾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대비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보상 등

1. 당사국들이 제4조에 규정한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가 타 당사국에게 발생된 경우, 피해를 야기한 국가는 손해를 제거 또는 완화시키거나 적절한 경우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국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최대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을 통해 환경피해보험, 호수 주변 산업체의 자발적 산업기금 등 피해보상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피해보상에 있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당사국 국민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In order to protect environment of the Bradder lake, the precautionary approach shall be widely applied by Parties according to their capabilities. 당사국 편집.

제7조 긴급통지 등

1. 브래더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당사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국 및 피해국에게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당사국들은 자국 관할권 하에서의 사고 등으로 브래더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제8조의 브래더호수 공동운영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만일 특정 당사국이 해당 긴급 상황으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국가는 자국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보유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적 협력기구

1. 당사국은 브래더호수의 공동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실무적 협력기구로서 브래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공동운영위원회는 당사국의 브래더호수를 담당하는 실무행정관 대표 및 각 국에서 추천한 국내외 물 환경 전문가 15인 등 총 23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동관리위원회는 브래더호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양국 수자원 정책 조율, 브래더호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심의, 수질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포함한 실무적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중략

제20조 정본

이 협약은 단일한 원본으로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작성되고, 각 원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하 생략

부록 2-3. 브래더호수 공동관리를 위한 협정 Agreement for Joint Management of the Brader Lake

이전 생략

제3조 국가결정기여

1. 브래더호수 수질오염에 대응한다는 협정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당사국은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통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노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당사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모든 당사국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가결정기여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달성하고자 하는 차기 국가결정기여를 준비하고, 통보하며, 유지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국가결정기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국내조치를 추구한다.
3. 각 당사국의 차기 국가결정기여는 상이한 국내 여건에 비추어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반영하고, 당사국의 현재 국가결정기여보다 진전되는 노력을 시현할 것이며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의욕 수준을 반영할 것이다.
4. 국가결정기여를 통보할 때, 모든 당사국은 이 협정 당사국총회의 모든 관련 결정에 따라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협정 당사국총회의 모든 관련 결정에 따라 5년마다 국가결정기여를 통보하며, 제4조에 언급된 이행점검의 결과를 통지받는다.
6. 당사국은 이 협정의 당사국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에 따라 자신의 의욕 수준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결정기여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
7. 당사국은 이 협정의 당사국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에 따라 자신의 국가결정기여를 산정하여 사무국에 통보한다. 통보된 국가결정기여는 사무국이 유지

하는 공공 등록부에 기록된다.

8. 당사국은 이 협정 당사국총회의 모든 관련 결정에 따라 국가결정기여 제도 발전을 추구한다.

제4조 이행점검

1. 이 협정의 당사국총회는 이 협정의 목적과 그 장기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동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이 협정의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총회에서 달리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2021년에 첫 번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후 5년마다 이를 실시한다.

3. 이행점검의 결과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국내적으로 결정한 방식으로 행동과 지원을 갱신하고 강화하도록 또한 브래더호수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도록 당사국에게 알려준다.

제5조 이행준수메커니즘

1. 이 협정 규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립한다.

2. 상기의 메커니즘은 전문가를 기반으로 한 촉진적 성격의 위원회로 구성되고, 이 위원회는 투명하고 비대립적이며 비징벌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 위원회는 당사국 각자의 국가적 능력과 여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채택되는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매년 이 협정의 당사국총회에 운영결과를 보고한다.

생략

제9조 당사국총회

1. 당사국총회는 협정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협정 및 당사국총회가 채택하는

관련 법적문서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권한의 범위 안에서 협정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결정을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총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 (1) 협정 규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공유된 정보에 근거하여 협력을 추구한다.
- (2) 협정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심의, 채택하고 공표한다.
- (3) 협정 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 (4) 협정에 따라 부여된 모든 기능과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당사국총회 제1차회기는 2015년 개최된다. 그 이후에는 당사국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정기회기는 매년 개최된다.

3. 당사국총회 특별회기는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당사국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다만, 이러한 서면요청은 사무국이 이를 당사국에게 통보한 후 6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국 3분의 1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4. 당사국총회의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해 채택되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의사결정규칙에 따라 투표로 결정한다.

이하 생략

제20조 정본

이 협정은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작성되고, 각 원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부록 3. 제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Decision 1/CP.1)

I.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1. 당사국들의 국가결정기여 제출을 환영하며, 아직 NDCs를 제출하지 않은 당사국에게는 브래더 협정이 발효되는 2016년 이전까지 NDCs 제출을 촉구한다.
2. 당사국들은 국가결정기여를 제출한 경우 해당 국가결정기여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자국의 국가결정기여를 산정할 때는, 협정의 당사국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에 따라 환경적 건전성,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비교가능성, 일관성을 촉진하며 이중계산의 방지를 보장한다.
4. 당사국들이 제출하여야 할 국가결정기여의 단위는 당사국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5)으로 함을 결정한다.
5. 당사국들이 제출하여야 할 국가결정기여의 설정 및 측정지점은 협정 당사국 관할 하천에서 브래더호수로 연결되는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결정한다.
6. 당사국들이 제출하여야 할 국가결정기여의 측정은 당사국총회에서 인정한 수질원격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결정한다.
7. 국가결정기여의 측정 결과 값은 당사국의 관할 행정기관 및 동 협정 사무국과 브래더 협약 공동관리위원회에 동시에 즉각 전송할 것을 결정한다.
8. 국가결정기여의 측정 결과 값은 당사국의 관할 행정기관 및 동 협정 사무국과 브래더 협약 공동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증 되며 그 결과는 이행준수위원회에 통보될 것임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 끝 -